

제25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2021.6.25.)

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4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0

**거창군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5. 3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6. 1.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군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사용의 예약, 취소시 반환근거 등을 마련하여 힐링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항노화 힐링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군민의 시설사용에 편의(감면)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취소, 환불 등과 입장 및 시설사용제한, 위탁운영, 체험료 등 전반적인 시설사용에 대한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힐링랜드 시설예약, 사용료 감면, 시설사용료 반환, 시설사용제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등 6개조항을 신설함.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거창향노화 힐링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

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조 제목 “입장료 등 면제”를 “입장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제10호의4”를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기존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7조·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

- 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 2. 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 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u>2시간 30분 내외</u>	<u>어른: 10,000원</u> <u>청소년·어린이: 5,000원</u>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6조(입장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p>	<p>제3조의2(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6조(입장료 등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한다.

<신 설>

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신 설>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8조(위탁 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영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5. 3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6. 1.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춘구 환경과장]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 및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규격을 폐기물 배출시 무게상한 규정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신설을 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7조 제6항에서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상한 신설

- 안 제7조의 2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 부과
 - 안 제12조의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신설
 - 안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안을 신설함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으로 한다)”를 “폐기물처리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로 “kg이상”을 “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2이”를 “별표 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앞의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을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을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제21조 앞의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다.”를 “없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다.”를 “같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가전제품류란, 생활용품란, 그 밖의 폐기물란의 마지막 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그 밖의 폐기물의 간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전 제품류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8,000
생활용품	어린이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	모든 규격	2,000
그 밖의 폐기물	간판	90×270센티미터 이상	10,000
		60×180센티미터 이상	7,000
		90×270센티미터 미만	4,000
		60×180센티미터 미만	3,000
		입간판	3,000
	그 밖에 미선별 생활폐기물	10킬로그램 기준	2,000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비고란 중 “1매당”을 “장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는 제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u>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삭 제></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u>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p>
<p>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신 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③ (생략)

<삭제>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쓰레기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장 보칙

<삭 제>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및 제7조 관련)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가. 골판지상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2)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3)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2)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4)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다. 신문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라.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마.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바. 그 밖의 종이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5)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6)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7)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4. 금속캔	가. 음료·주류캔, 식료품캔(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나.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2)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3)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P.P마대에 담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쟁반형 용기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쟁반형 용기류(음료용기, 세정용기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5)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각종 비닐류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 흠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3)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4)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8.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가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4) 비해당 품목: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	가. 면의류 나. 그 밖의 의류 가.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나.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다.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라. 그 밖의 합성섬유류	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갖춰 둔 헌옷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0.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2)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3) 주요 거점에 갖춰 둔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1.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 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배출
14. 가전 제품류	대형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	1) 이물질 제거 후 배출 2)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나.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다.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라.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수수료자립도 \times 0.09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단위: 원)

용량	공급 가격(장당)	판매 가격(장당)
3리터	45	50
5리터	91	100
10리터	182	200
20리터	364	400
50리터	819	900
75리터	1,228	1,350<신 설>
100리터	1,638	1,800<삭 제>
50리터 (pp)	964	1,060
100리터 (pp)	1,929	2,120<삭 제>

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5. 3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6. 1.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운중 농업기술과장]

-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천적생태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그들을 예우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천적생태 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그들을 예우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조항에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2.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해당하는 규제정비(안 제6조제2항, 제10조)
 3.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안 제7조제1항·별표 2)
 -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 및 권고사항 반영
 4. 법령 중복·재기재 정비(안 제12조~제14조)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관람료 면제기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을 “거함대로 3372-60”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일”을 “그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3조·제14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에 둔다.</p> <p>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u>별표</u>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u>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u>당일</u>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p> <p>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u>군수는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u>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u>거함대로 3372-60</u>에 둔다.</p> <p>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u>별표 1</u>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u>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u></p> <p>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u>그날</u>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p> <p>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u>군수는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1. <u>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u> 2.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u> 3. <u>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u> 4. <u>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u> 5. <u>「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들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u> 6.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u> 7.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u> 8. <u>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u> 9. <u>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u> 10. <u>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② <u>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0조(관람자의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u></p> <p><u>제12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u></p>	<p>② <u>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u></p>

현 행	개정안
<p>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있다.</p>
<p>제13조(준용) ①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과학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p>	<p><삭 제></p>

현 행	개정안
<p><u>준용한다.</u></p> <p><u>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별표 2] <신 설>

관람료 면제기준(제7조제1항관련)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들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6.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17.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8.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 설립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5. 3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6. 1.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북상면 월성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에 태양광을 설치코자 함.
- 주요내용

위치	면적 (m ²)	설치 (m ²)	설치용량 (kW)	사용허가신청자	비고
북상면 월성리 1084-4 (자연체험학습 관 옥상)	4,956	86	18.06	달빛고운영농조 합법인 대표 정종인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건물옥상에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4-4(지목 : 대지)



현장사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북상면 월성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 받은 재산관리관은 관련 법령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한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 조건완비로 영구시설물 축조와 사용수익·허가는 동의함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에너지관련 법령,조례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